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내 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그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¹⁹⁰⁾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복지관’ 등 15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 등 31명의 종사자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한 퇴직적립금 20,779,751원을 기한 내에 반환 받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미환수 퇴직적립금 4,208,948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9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라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시행 2015.12.24.)

원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미환수 퇴직적립금 156,98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미환수 퇴직적립금 2,471,9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미환수 퇴직적립금 616,506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미환수 퇴직적립금 2,590,167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미환수 퇴직적립금 10,735,25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